

문서번호	세무1과-9288
결재일자	2016.6.10.
공개여부	부분공개(6)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184호

주무관	부동산평가팀장	세무1과장	기획경제국장	부구청장
송현경	유수영	소재근	고재풍	전결 06/10 김경호
협 조				

**2016년 6월 1일 기준
개별주택가격 조사 · 산정 계획**



기 획 경 제 국
(세 무 1 과)

201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·산정 계획

■ 개 요

- 대 상 : 2016.1.1. ~ 5.31.까지 신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주택
- 조사기준일 : 2016. 6. 1.
- 결정·공시일 : 2016. 9. 30.
- 법적근거 :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

※ 변동사유 발생 주택

-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상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주택
- 「건축법」 상 건물이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 및 대수선된 주택
- 「건축법」 상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주택
- 국·공유재산인 주택이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(私有)주택으로 된
단독주택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등

■ 조사 대상 : 총 92 호(내역서 별첨)

-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상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주택 : 2호
- 「건축법」 상 건물이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 및 대수선된 주택 : 80호
- 「건축법」 상 건물의 용도 변경된 주택 : 10호

■ 조사 및 산정방법

- 가격조사산정 시에는 당해 연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에 의하여 하되 조사기준일 현재(6월 1일)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함
- 조사기준일 현재까지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 통계처리하여 시·군·구에 제공함

■ 결정 · 공시절차

-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4월말 결정 ·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절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공시함
- ※ 6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토지의 분할·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결정 · 공시

■ 세부추진 일정

- 개별주택 특성조사, 가격산정 및 검증 : 5. 30. ~ 7. 29.
-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: 8. 11. ~ 8. 31.
- 의견제출가격 처리(심의 및 결과통지) : 9. 12. ~ 9. 23.
- 개별주택가격 결정·공시 : 9. 30.
- 이의신청접수 : 9. 30. ~ 10. 31.
-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: 11. 1. ~ 11. 18.
- 조정·공시 : 11. 30.

▶ 붙임 : 2016. 6. 1.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1부. 끝.